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01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차규근 · 김준형 · 신장식
박은정 · 서왕진 · 김선민
강경숙 · 최혁진 · 황운하
이해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전문 공정 수요 및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는 인력 고용주체인 하수급인 등에게만 부과되어 있어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은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문제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건설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관리·감독)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사람은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등”이라 한다)이 제18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9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자신의 하수급인등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사람

제99조의3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95조제5호의2의 위반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2(건설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관리·감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사람은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 등”이라 한다)이 제18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u>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제95조(벌칙) ----- ----- ----- -----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2.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자신의 하수급인등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사람</u>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	제99조의3(양벌규정) -----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u><신설></u> 5. ~ 7. (생략)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95조제5호의2의 위반행위</u> 5. ~ 7. (현행과 같음)
---	--